화성시 마도면 제 2025 - 27 호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간 내에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5. 3. 26.(수) ~ 2025. 4. 14.(월) (19일간)

2. 공고대상 및 사유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주 소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반송사유
1	김 * 성	2008-03-08	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	2025. 4. 1. ~ 2026. 3. 31.	폐문부재

3. 문의사항 : 화성시 마도면 주민등록증 담당(☎031-5189-2753)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2025년 3월 26일

마 도 면 장 화성시 마도면 장인